

계절학기 운영 규정

제정 1998. 6. 5.

제17차 개정 2025. 9.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2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1조 제9항에 따라 계절학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9.)

제2조(용어의 정의) “계절학기”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규정된 학사과정 이수 학점 중 일부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교과목 개설 및 담당교원 배정) ① 교과목 개설은 편성과목에 개설되어 있는 학사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수강대상자의 폭이 넓고 설강 운영이 가능한 교과목과 개설 가능한 e-러닝강좌로 하며, 개설 교과목은 전임 및 비전임교원으로 배정한다. (개정 2005.11.7., 2018.10.29., 2019.12.02.)(제목개정 2018.10.29.)

② 각 교과목별 최저 수강인원은 10명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단,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 2005.11.7., 2016.11.14., 2021.01.13., 2023.03.15., 2024.12.17)

③ 삭제 (2024.12.17.)

제4조(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학점 당 수업 시간 수는 15시간(실험·실습과목은 30시간)으로 한다. 단, 학칙 제31조의4(현장실습)에 의한 현장실습 과목은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2.27., 2013.2.7., 2018.10.29)

제5조(수업계획서 제출) 계절학기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신청 개시일 2주전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계절학기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7)

제6조(취득학점 제한) ①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 계절학기당 9학점이내로 한다. (개정 2005.11.7., 2006.2.27, 2011.1.11. 2015.06.05., 2018.10.29., 2021.01.13., 2025.9.2.)

② 삭제 (항 신설 2005.11.7) (개정 2006.2.27., 2011.1.11)

제7조(수강자격) 수강자격은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치고 당해 학기 수강신청을 필한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5.11.7)

제8조(수강신청) ①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지정된 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수강지도 를 받아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2.6., 2019.06.25., 2022.04.20)

② 수강신청 마감 후 수강인원이 미달되어 폐강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은 취소된다. 다만,

폐강된 교과목은 지정된 기간에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신청 할 수 있다.

제9조(시험) 계절학기의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성적) ① 교과목당 수업시간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2.6)

②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소요학점과 졸업시 전체 평균평점에만 합산시키며, 정규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장학생선발 및 학사경고 성적과는 관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2)

제11조(등록) ① 학생은 계절학기 등록 시에는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8.10.29.)

1. 당해학기 개시일 전 : 수업료 전액 (신설 2018.10.29.)
2. 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신설 2018.10.29.)
3. 수업일수의 1/2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신설 2018.10.29.)
4. 수업일수의 2/3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신설 2018.10.29.)
5. 수업일수의 2/3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신설 2018.10.29.)

② 납입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강사로 지급) 계절학기 담당교수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당해 학기마다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규정의 준용)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정규학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9 : 2005.1.24)

이 규정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58, 2005.11.7)

이 규정은 2005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213, 2006.2.27)

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0, 2011.1.12)

제1조 (시행일) 변경 규정은 201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6조는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하며 휴학 및 복학, 편입, 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기존 140학점제 적용대상자는 변경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90, 2013.2.7)

이 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51, 2015.06.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6조 1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예산부-803, 2016.11.11)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47, 2018.10.29)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87, 2019.12.0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6, 2021.01.13)

이 규정은 2021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92, 2023.03.15.)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761, 2024.12.17.)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908, 2025.09.02.)

이 규정은 202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